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4
----------	-----

2011년 7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0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1년 7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복지건강본부장 이정관)

○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28일에 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에서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비 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하여 시·구간 부담할 비율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와 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비용확보, 예산계상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 인구비율에 따라 50%에서 70%까지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토록 함.
- 재정여건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지표로 삼았으며, 장애인 인구비율은 총인구수 중 장애인 인구수의 비율로 산출하였고 각 지표는 3단계로 구분하였음.

3.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총괄

-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상호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내용

(1) 비용부담 관련 사항(안 제2조)

- 안 제2조는 「장애인연금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¹⁾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상호 부담하는 금액 중 시가 부담하는 장애인 연금비율을 정한 것임.
부담비율은 국비부담을 50%로 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상호 부담하는 것임.
-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장애인인구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50%부터 70%까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3 단계(55% 미만, 55% 이상 ~ 75% 미만, 75% 이상)로 구분한 것임.
- 또한, 장애인인구비율은 자치구의 전전년도말 주민등록상 총인구수 중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인구수의 비율을 3단계(3.5% 미만, 3.5% 이상 ~ 4% 미만, 4% 이상)로 구분한 것임.

1) 「장애인연금법」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부담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 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100분의 50

2. 광역시·도·특별자치도: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이에 근거해서 2011년 시비부담률에 따른 자치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비부담률 50%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강남, 서초, 송파구로 나타났고, 70%는 금천, 은평, 강북, 노원, 중랑구였음.

[참고] 2011년 시비부담률에 따른 자치구 배치 현황

구 분		자치구의 장애인인구 비율		
		3.5% 미만	3.5% 이상 ~ 4% 미만	4% 이상
자치구의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	75% 이상	50% (강남, 서초, 송파)	55% (종로, 영등포)	60% (중구, 용산)
	55% 이상 ~75%미만	55% (성동, 광진)	60% (마포, 양천, 강동, 동작, 구로)	65% (강서, 동대문)
	55% 미만	60%	65% (서대문, 성북, 관악, 도봉)	70% (금천, 은평, 강북, 노원, 중랑)

※ 시·구비부담 : 시비 179억원(63%), 구비 105억원(37%)

○ 시비부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와 장애인 인구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상이한 재정여건 및 해당 자치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률 기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봄.

○ 다만, 이러한 단계적 구분을 본 조례에서와 같이 3단계로 각각 구분하는 것보다는 자치구의 현실이 보다 충분히 반영된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일례로, 강서구가 10억 5천 1백만원의 부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 중구의 경우는 1억 8천 3백만원의 부담액을 보여, 주민 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균형 있는 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차후 현 25개 자치구의 현실적 통계 등을 기초로 해서 세분화 된 구분기준을 세워 모두가 수용하는 비용부담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타 복지비용에 있어서 시와 구간 부담비율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즉, 총 지방비 기준으로 시비 및 구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 기초노령연금은 51.5 : 48.5,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65.2 : 34.8이며,
- 본 조례안에서는 63 : 37로 타 복지비용의 구비부담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자치구

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참고] 타 복지비용의 시·구 부담비율과의 비교

계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례안의 분담(안)
시비	51.5%	65.2%	63.0%
구비	48.5%	34.8%	37.0%

(2) 기타 의견

- 장애인연금은 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해당 자치구에서는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함.
- 한편, 안 제5조 제1항에서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통보”로 명시하고 있으나, 통보 관련 사항은 제3조라는 점에서, “제4조”를 “제3조”로 자구수정하여야 할 것임.
- 장애인연금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서울시와 각자치구 상호간에 부담할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지방재정법」 제25조 및 제26조²⁾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법 입안시 지방자치단체의

2) 「지방재정법」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동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처럼,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개정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봄.

물론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의 추진시 입법예고(2010. 9. 16~ 10. 6)등을 거쳐 일부 자치구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는 있지만, 자치구의 재정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치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됨 (참고: 서울시 입법예고 결과 및 참고3. 자치구의 의견조회 결과 참고).

- 장애인연금 비용에 관한 부담시기와 그 비율은 시와 자치구간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한바, 자치구의 부담이 과중하여 일정부분 줄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당초 비율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참고자료1: 2011년 자치구별 예산소요 추계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총 소요액 (국시구비)	국비		시비		구비	
			금액(비율)		금액(비율)		금액(비율)	
계		56,833,394	28,416,697		17,903,043		10,513,654	
평균		2,267,356	1,133,678	50%	713,132	31.5%	420,546	18.5%
1	종로구	1,757,396	878,698	50%	483,284	27.5%	395,414	22.5%
2	중구	916,374	458,187	50%	274,912	30.0%	183,275	20.0%
3	용산구	1,033,046	516,523	50%	309,914	30.0%	206,609	20.0%
4	성동구	1,296,778	648,389	50%	356,614	27.5%	291,775	22.5%
5	광진구	1,356,330	678,165	50%	372,991	27.5%	305,174	22.5%
6	동대문구	1,861,916	930,958	50%	605,123	32.5%	325,835	17.5%
7	중랑구	2,831,766	1,415,883	50%	991,118	35.0%	424,765	15.0%
8	성북구	1,962,790	981,395	50%	637,907	32.5%	343,488	17.5%
9	강북구	2,608,140	1,304,070	50%	912,849	35.0%	391,221	15.0%
10	도봉구	1,686,904	843,452	50%	548,244	32.5%	295,208	17.5%
11	노원구	6,908,048	3,454,024	50%	2,417,817	35.0%	1,036,207	15.0%
12	은평구	3,902,488	1,951,244	50%	1,365,871	35.0%	585,373	15.0%
13	서대문구	1,448,696	724,348	50%	470,826	32.5%	253,522	17.5%
14	마포구	1,841,254	920,627	50%	552,376	30.0%	368,251	20.0%
15	양천구	2,388,162	1,194,081	50%	716,449	30.0%	477,632	20.0%
16	강서구	6,007,474	3,003,737	50%	1,952,429	32.5%	1,051,308	17.5%
17	구로구	1,729,444	864,722	50%	518,833	30.0%	345,889	20.0%
18	금천구	1,479,080	739,540	50%	517,678	35.0%	221,862	15.0%
19	영등포구	1,648,014	824,007	50%	453,204	27.5%	370,803	22.5%
20	동작구	1,745,242	872,621	50%	523,573	30.0%	349,048	20.0%
21	관악구	2,401,532	1,200,766	50%	780,498	32.5%	420,268	17.5%
22	서초구	1,019,680	509,840	50%	254,920	25.0%	254,920	25.0%
23	강남구	2,966,668	1,483,334	50%	741,667	25.0%	741,667	25.0%
24	송파구	1,936,052	968,026	50%	484,013	25.0%	484,013	25.0%
25	강동구	1,950,636	975,318	50%	585,191	30.0%	390,127	20.0%
26	관외 시립시설	149,484	74,742	50%	74,742	50.0%	0	

※ 참고자료2: 자치구별 인구 · 장애인수 예산지표

연번	자치구	인구수(A) (09.12.31 기준)	장애인현황 (09.12.31기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2010년기준)		재정자주도 (2010년기준)	재정자립도 (2010년기준)
			장애인수(B) (09.12.31 기준)	장애인 인구비율 (B/A)	충족도	순위		
	계	10,464,051	401,638					
	평균	418,562	16,066	3.9	70.8		73.8	48.9
1	종로구	177,543	7,008	3.94	99.4	4	84.6	78.5
2	중구	137,861	6,211	4.50	135.3	2	85.0	82.9
3	용산구	251,200	12,668	5.04	76.5	7	80.0	62.7
4	성동구	316,064	9,310	2.94	59.2	12	78.0	52.0
5	광진구	386,513	13,099	3.38	59.5	11	73.2	44.0
6	동대문구	374,277	16,236	4.33	58.1	15	76.7	46.2
7	종랑구	429,700	20,164	4.69	45.3	25	66.1	30.5
8	성북구	484,457	19,234	3.97	51.2	19	68.7	34.8
9	강북구	343,912	17,170	4.99	47.6	23	66.6	31.7
10	도봉구	372,398	14,507	3.89	50.3	21	72.0	35.9
11	노원구	615,161	27,969	4.54	47.6	23	59.5	27.4
12	은평구	470,782	20,679	4.39	48.0	22	68.8	33.8
13	서대문구	336,649	13,042	3.87	53.4	18	71.8	38.6
14	마포구	392,313	14,581	3.71	63.1	8	73.4	47.1
15	양천구	506,684	17,887	3.53	61.1	9	69.9	43.6
16	강서구	579,196	26,771	4.62	58.7	13	59.4	33.8
17	구로구	449,613	17,082	3.79	57.0	16	71.0	40.1
18	금천구	263,116	10,954	4.16	54.6	17	69.0	37.8
19	영등포구	441,747	16,710	3.78	85.4	6	76.5	66.5
20	동작구	407,973	15,282	3.74	58.6	14	74.8	45.0
21	관악구	547,311	20,704	3.78	51.2	19	67.3	33.9
22	서초구	431,131	10,539	2.44	119.0	3	88.0	79.8
23	강남구	569,499	15,173	2.66	176.7	1	89.3	77.1
24	송파구	689,296	20,727	3.00	93.2	5	79.4	73.9
25	강동구	489,655	17,931	3.66	59.8	10	75.9	44.5

※ 참고자료3: 각 자치구의 의견 내용 (보건복지위원회 조사, 총 25개구 중 6개구에서 의견 제출함)

구분	제시 의견
강서구	〈수정요구안〉 시비부담률 상향 국 · 시 · 구비 부담비율(50 : 32.5 : 17.5 -) 50: 35: 15)
송파구	〈수정요구안〉 국 · 시 · 구비 부담비율(50 : 25 : 25 -) 50: 30: 20)
도봉구 구로구	〈수정요구안〉 시비 부담률 상향조정(50~70% -) 50~90%) 시비 100% 부담 조치 필요
강남구	서울시의 부담비율을 75%(3/4)이상을 적용하고 자치구 25%(1/4)로 동일하게 적용
영등포구	분담율을 합리적으로 낮추고, 그 시행시기를 유예 조정 시행시기에 따른 '소급입법 금지'원칙 적용되어 위헌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2011년도 비용부담 총액은 얼마이며, 이 예산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요망.
- 답변 : 총 602억원으로,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부담금은 189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구비는 111억원 정도로 예산구조를 짜 놓은 상태임.
- 질의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하게 되어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장애인연금 비용에 따른 자치구의 부담분을 조례제정 이전에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위반은 아니며, 가내시 과정에서 자치구의 동의가 있었음.
- 질의 :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가내시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토록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보다 엄격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분명히 하고 법적근거를 갖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더욱이 자치구에 주겠다고 가내시했던 재정교부금은 내려 보내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비용부담을 하라는 것은 자치구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자치구 재정 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복지에 대한 골격은 유지한 채로, 재정 부담을 별도로 고민 해야 함.
- 질의 : 장애인연금 시행시기가 언제이며, 법령제정 당시 바로 조례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요망.
- 답변 : 장애인연금법 시행은 2010년도 7월 1일로, 이미 법령이 제정되면서 바로 조례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보며, 이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 질의 : 자치구의 의견회신에 대해서는 맞춤형행정이 어려우므로, TF팀등을 구성하거나 공청회등을 실시하여 자치구들의 이견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함,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자치구 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공지가 있었는지 답변요망.

○ 답변 : 사전 공지가 있었고, 자치구의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음.

자치구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례안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으나 자치구 부담비율을 줄여달라는 것임.

○ 질의 : 자치구의 비용부담에 있어 장애인구수에 따라 그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장애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이는 달리보면 국가가 장애인을 특정 지역으로 몰아 넣어 놓고도 그 지역은 장애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비용부담을 많이 하라는 것 과 다름없음. 비용부담을 결정 결과를 놓고 볼 때, 장애인 수가 많을수록 자치구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대한 답변바람.

○ 답변 : 장애인수를 비용부담 매트릭스에 넣은 이유는 장애인 수가 많을수록 시비 부담이 커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곧 자치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 기타의견

- 비용부담을 하는 시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만, 각자 연금을 받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님. 이런 문제를 놓고 서로 떠넘기려하는듯하여 안타까움. 이에 조례제정에 대해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연금을 수령하는 장애인들에게 실망되지 않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 별도의 재원마련이 안된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어려움이 크다면, 서울시도 중앙정부에 이러한 고충을 얘기해야할 것임. 중앙정부는 서울시에 떠넘기고, 자치구는 어렵다고 하니, 서울시도 재원의 불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하며, 실·국 차원에서 재정악화를 막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본 조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2011년 2월 22일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정된바있고, 서울시가 이미 만들어야 할 것을 만들지 못한 것임.

자치구 행위를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급식예산 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관련 비용부담이 과하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할 사안이며, 장애인연금비용 부담과 관련된 조례는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 반영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및 자치구와 합의 완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10. 9. 16.~ 10. 6.)

-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 : 2011년 07월 0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치구의 비용 부담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비용에 대한 부담 시기를 조정하고, 시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며,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제4조”를 “제3조”로 자구수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안 제2조 제1항의 별표 「시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 인구비율에 따라 50%에서 80%까지 로 수정 함.
- 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제4조”를 “제3조”로 자구수정 함.
- 안 부칙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에서 “공포한 날로 부터”로 수정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 반영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의 별표 ‘시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시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② 자치구의 장애인인구 비율		
		100분의 3.5 미만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4 미만	100분의 4 이상
①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50	100분의 57.5	100분의 65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100분의 57.5	100분의 65	100분의 72.5
	100분의 55미만	100분의 65	100분의 72.5	100분의 80

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비용의 부담)① “별표”					제2조(비용의 부담)① “별표”				
구 분		② 자치구의 장애인인구 비율			구 분		② 자치구의 장애인인구 비율		
		100분의 3.5 미만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4 미만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3.5 미만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4 미만	100분의 4 이상
①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50	100분의 55	100분의 60	①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50	100분의 57.5	100분의 65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75 미만	100분의 55	100분의 60	100분의 65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75 미만	100분의 57.5	100분의 65	100분의 72.5
	100분의 55 미만	100분의 60	100분의 65	100분의 70		100분의 55 미만	100분의 65	100분의 72.5	100분의 80
<p>제5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또는 장애인인구비율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5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 ----- ----- ----- 제3조 ----- ----- -----.</p>				
<p>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간에 부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 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비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라 한다)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자치구가 상호 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시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구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또는 장애인인구비율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② 자치구의 장애인인구 비율		
		100분의 3.5 미만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4 미만	100분의 4 이상
①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50	100분의 57.5	100분의 65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100분의 57.5	100분의 65	100분의 72.5
	100분의 55미만	100분의 65	100분의 72.5	100분의 80

□ 산출방법

$$\text{①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 \frac{\text{기준재정수입액}}{\text{기준재정수요액}} \times 100\%$$

$$\text{② 자치구의 장애인인구 비율} = \frac{\text{장애인 인구 수}}{\text{전체 인구 수}} \times 100\%$$

※ 비고

1.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은 각각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전체 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전체 인구 수에 따르고, “장애인 인구 수”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따르며,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